

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(김재진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02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4일

발 의 자: 김재진, 강석주, 고광민, 곽향기, 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 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 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 박상혁, 박 석, 박영한, 박춘선, 박칠성, 박환희, 서상열, 소영철, 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윤종복, 이봉준, 이상욱, 이영실, 이종배, 이종태, 임춘대, 정준호, 최민규, 허 훈, 홍국표, 황철규
의원(45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학교 등의 급식종사자에게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이 빈발하고 있고, 이에 따라 산재 신청도 증가하고 있음.
- 산재 신청자들은 그 원인을 조리 중에 발생하는 연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, 2022년 11월 교육청 등이 실시한 전수조사에 따르면,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약 20%가 폐질환, 60여 명은 폐암 의심이라고 보고하고 있는 등 집단급식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.
- 이에 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자의 책무와 시장의 지원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로 함.
- 나. 시민의 책무 규정 신설(안 제4조)
- 다.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)
- 라.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규정 신설(안 제6조)
- 마. 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 관리 규정 신설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

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다중이용시설,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다중이용시설”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.
2. “공동주택”이란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.
3. “대중교통차량”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.
4. “오염물질”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「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5. “환기설비”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

내로 끌어들이어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른다.

제4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,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) ① 시장은 법 제4조의4에 따라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실내공기질 실태조사)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, 「공공기관

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그 밖에 「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3조에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7조(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설정)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.

제8조(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) ①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또는 운행 등에 관한 관리지침(이하 “관리지침”이라 한다)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관리·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·관리에 필요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9조(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) ①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내에 있는 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·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기술적·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하되, 이 중 마목은 제외한다.

제10조(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어린이, 노인,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·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

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·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
2.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
3.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·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·행정적·재정적 지원

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.

제11조(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) ① 시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.

②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유효기간은 선정일부터 2년으로 한다.

③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선정기간 중 현장점검 및 오염물질별 공기질 기준 준수 등 우수시설 선정기준에 부적합 경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12조(보고 및 검사 등) ①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·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·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실내공기질 유지기준(제4조 관련)

오염물질 항목	미세먼지 (PM10, $\mu\text{g}/\text{m}^3$)	초미세먼지 (PM25, $\mu\text{g}/\text{m}^3$)	이산화탄소 (CO ₂ , ppm)	폼알데하이드 (HCHO, $\mu\text{g}/\text{m}^3$)	총부유세균 (CFU/ m^3)	일산화탄소 (CO, ppm)
다중이용시설						
지하역사, 지하도상가	100 이하	50 이하	1,000 이하	100 이하	-	9 이하
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, 철도역사의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도서관, 박물관 및 미술관, 대규모 점포, 장례식장, 영화상영관, 학원, 전시시설,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, 목욕장업의 영업시설	100 이하	50 이하	1,000 이하	100 이하	-	9 이하
의료기관, 산후조리원, 노인요양시설, 어린이집, 실내 어린이놀이시설	75 이하	35 이하	900 이하	80 이하	800 이하	9 이하
실내주차장	180 이하	-	1,000 이하	100 이하	-	20 이하
실내 체육시설, 실내 공연장, 업무시설,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 되는 건축물	200 이하	-	-	-	-	-

비고

1. 도서관, 영화상영관, 학원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 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,500ppm 이하로 한다.
2. 실내 체육시설, 실내 공연장,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(PM-10)의 농도가 $200\mu\text{g}/\text{m}^3$ 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(덕트)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.
 - 가.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·배기관(급·배기구를 포함한다)
 - 나. 중앙집중식 냉·난방시설의 급·배기구
 - 다.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
 - 라. 화장실용 배기관
 - 마. 조리용 배기관